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01 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황정아·조인철·정동영

박민규 • 이훈기 • 김우영

최민희 · 노종면 · 이정헌
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,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,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·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. 또한, 한국방송공사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(안 제46조, 제49조제1항제7호의2·제50조제7항·제50조의2 신설).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 중 "11人"을 "1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理事는"을 "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"로, "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"를 "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(性)을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,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, 활동내용,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(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). 이 경우특정 성(性)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3. 공사의 시청자위원회(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도 포함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 2명. 이 경우 특정 성(性)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공사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다만,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- 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
제5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(意思)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- 1.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2.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 대한 경우
- 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 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
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0조의2(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 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 -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며,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활동을 지원해야 한다.
 -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 -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

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
-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 중 "추천"을 "임명제청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46條(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	第46條(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	②
이사 <u>11人</u> 으로 구성한다.	<u>15명</u>
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	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
고려하여 <u>방송통신위원회에서</u>	<u>지역성 및 사회</u>
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.	<u>다음 각 호에</u>
	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
	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
	<u>령이 임명한다</u> .
<u><신 설></u>	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
	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
	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
	특정 성(性)을 1명 이상 추천
	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
	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<u><신 설></u>	2.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,
	활동내용, 회원 수를 기준으
	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
	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
	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(지역
	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
	명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특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④ ~ ⑥ (생 략)

⑦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.<< 단서</td>신설>

- <u>정 성(性)이 2명 이상이 되도</u>록 하여야 한다.
- 3. 공사의 시청자위원회(지역총 국의 시청자위원회도 포함한 다)가 추천하는 사람 2명. 이 경우 특정 성(性)이 1명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공사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 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 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 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・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<u>⑤</u> ~ <u>⑦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
- 8 -----

-----. <u>다만, 제</u> 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

<신 설>

<신 설>

⑧・⑨ (생략)

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・議決한다.

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8. ~ 15. (생략)

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
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① · ② (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)

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7의2.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 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
8. ~ 15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第50條(執行機關) ① ~ ⑥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 ② (현행과 같음)
- 第50條(執行機關) ① ~ ⑥ (현행 과 같음)
 - ⑦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(意思) 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 - 1.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- 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제50조의2(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 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 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

구성한다.

- ③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 며,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록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가 제2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-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 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 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 천하여야 한다.
-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 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